

학생공상처리규정

1996.10.01.제정 1999.05.20.일부개정 2004.03.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4.03.28.일부개정 2017.10.01.일부개정. 2022.04.01.일부개정

<학생·장학봉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재학생이 공상으로 치료를 요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보조함으로써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

제2조(공상의 기준) 공상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식행사 중 입은 부상이라도 그 행사와 무관하거나 학생의 고의성과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부상은 예외로 한다.

1. 교내수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2. 교내의 시설물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3.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행사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4.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및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제3조(관장) 공상처리에 관한 업무는 학생처 학생·장학봉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4.3.28.,2017.10.01.,2022.4.1.)

제4조(수혜의 자격) 등록을 필한 본 대학교의 재학생에게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본 대학교의 재학생 신분을 떠남과 동시에 수혜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본 규정에 따른 진료 도중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3.1)

제5조(위원회) (삭제 2004.3.1)

제6조(위원회구성) (삭제 2004.3.1)

제7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04.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4.3.1)

제9조(공상처리절차) ① 본 대학교 학생이 제2조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즉시 학생처로 통보하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1. 교내에서 치료 가능 여부의 확인을 받는다.
2. 교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 ② 학생이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상을 교외에서 당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부상당한 즉시 학생처로 통보한 후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익일 학생처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2.8.1.)
 2. 학생처에서는 부상 통보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학생처장이 공상 처리가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공상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개정 2011.4.18, 2012.8.1.)
 3. 학생이 공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진료비를 학생처를 통하여 보험사에 청구한다. (개정 2011.4.18, 2012.8.1.)
 - 가. 보험금청구서
 - 나. 사고경위서
 - 다. 의료비영수증
 - 라. 진단서
 - 마. 재학증명서

제10조(공상처리의 제한) 제9조의 절차 및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공상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치료비지급) 학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진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 개인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학생본인에게 현금 지급한다. (개정 2004.3.1)

제12조(공상처리한도액) (삭제 2004.3.1)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